

1.약관명: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

2.시행일: 2025.12.01

3.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: 미적용

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약관 일부개정 전후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(공사)은 서면으로 독촉하고,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(공사)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은행(공사)에 대한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다만,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경우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방법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일 등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를 적용합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등</p> <p>①</p> <hr/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88억원 기준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자산기준 초과시 사후제재 강화 내용 반영</p>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제15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①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4.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<u>1천만원 이내</u> 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<u>0.2%p</u> 가산하며 <u>1천만원 초과인</u>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<u>3.0%p</u> 가산 적용하기로 합니다.[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] ②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,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. ③ (생략) ④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(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	제15조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적용 및 조건변경 제한 ① _____ _____ <u>1천만원 이내</u> _____ <u>0.2%p</u> 가산 _____ <u>1천만원 초과</u> _____ <u>3.0%p</u> 가산, <u>5천만원 초과인</u> 경우 <u>5.0%p</u> 가산, <u>1억원 초과인</u> 경우 <u>5.0%p</u> 가산 적용 및 기한이익상실 처리하기로합니다. ② _____ —경우에는 우대금리적용이 제외 되며 _____ ③ (현행과 같음) ④ _____ _____ _____ <u>다만, 기한이익상실되는 경 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며</u> _____ _____	순자산기준 초과구간 강조 표시 및 패널티 부분 자필서명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자산기준 초과시 사후제재 강화 내용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이자납입일 익일)부터 적용합니다.		
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(또는 금리변경) <신설> 및 조건변경 제한과 최종 적격 확정시 금리 적용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히 설명 듣고 동의함	본인 (인) _____, _____- 기한이익상설, 우대금리 적용제외 _____ _____ _____	본인 (인)